

교회 업무수행 중 사망한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한 사례

사건 주제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심 급 : 청주지방법원
선고 일자 : 2012. 6. 14.
사건 번호 : 2011구합2380
당 사 자 : <원고>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5. 경 경주시 **동에 있는 *****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전도사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1. 5. 26.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로부터 우편물 발송 및 비품 구입을 지시받았다.

나. 이에 망인은 위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15경 이 사건 교회 소유의 **두 **** 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동에 있는 ***한증막 앞 **로 노상을 ***삼거리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외상 후 다발성 장기 손상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교회가 망인외 다른 근로자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 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비록 망인이 전도사로서 성직자에 해당하나, 전도사는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전 단계로서 종속적인 위치에서 목사를 보좌하는 직책인 점, 특히 망인은 이 사건 교회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채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 ○○○의 지시에 따라 교회 차량 운전 및 각종 행정 업무 등을 모두 담당한 점, 망인이 전도사로서 근무하는 대가로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망인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교회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회는 1953. 8. 15. 설립되어 1999. 1. 30. 비영리 종교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3. 22.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는 안수집사 ○○으로 등록되어 있다.

2) 망인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2001년 경부터 *****회에 소속되어 전도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포항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2년간 전도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포항 및 경주 권역에서 3년 이상 전도사로 근무함으로써 그 권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하여 망인은 2010. 12. 5.경 경주시에 있는 이 사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 바, 그 과정에서 망인은 담임목사 ○○○와의 면접 및 이 사건 교회 내 청빙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거쳤고, 2010. 11. 30.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된 안수집사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 사례비(급료)등

① ○○○의 월 급료액은 170만 원으로 하며, 급료는 매월 2~7일 중에 지급한다.

② 위 금액 중 120만 원은 통장으로 지급하고, 50만 원은 현찰(관리비 등 비용 충당)로 지급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청빙위원회 승인 의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1년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근로시간

① 근로일은 화요일~일요일까지로 한다.
② 근로시간은 새벽기도로 시작하여 수요예배, 금요절야, 주일저녁예배 이외의 날에는 18:00까지로 한다.

제4조 휴일 휴가

① ○○○의 유급휴일은 월요일로 한다.
② 여름휴가(3박 4일)를 줄 수 있다.

제5조 근무장소 및 직무

○○○의 근무장소는 ○○○침례교회로 하며, 심방, 예배, 교회업무(행정 및 교회 행사 진행 등), 차량 운행, 기타 목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 준수의무

① ○○○은 교회의 방침과 윤리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은 ○○○침례교회 대표자 ○○의 업무지시에 충실하여야 하며, 성도들의 필요 및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이 사건 교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은 담임목사 ○○○와 망인뿐이었는 바, 담임목사 ○○○는 이 사건 교회에 2010. 3. 22. 부임하여 설교와 심방, 교육 등 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망인은 담임목사 ○○○를 보좌하여 심방, 예배 보조 등 종교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벽예배나 금요일 철야예배 시에는 교회 차량을 운전하여 신도들을 수송하였고, 교회 홍보나 행사 진행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 담임목사 ○○○가 그때그 때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각종 업무를 수행해 왔다.

4) 망인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무일이었으며, 기본 근무 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이고 그 이외에도 새벽예배가 있는 경우나 수요일 저녁예배, 금요일 철야예배, 주일 저녁예배 시에는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하였다.

5) 망인은 이 사건 교회 측이 제공하는 사택인 경주시 *동 ***** ***호에서 원고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매월 정기적 · 고정적으로 17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그 중 120만 원은 계

좌로 임금 받고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6)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은 이른바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망인이 2006. 12.경부터 2008. 12.경까지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위 법에서 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쟁점은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중 하나의 직책에 해당하는 전도사인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성직자를 두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성직자를 사회적 관점이나 법적 관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여 사회보험의 일환인 산재보험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상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망인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없어서 이 사건 교회가 산재 보험법 제6조에 따른 당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망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이상 이 사건 교회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당해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근로자가 더 있어야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 ○○○와의 면접 및 이 사건 교회 내 청빙위원회의 승인 의결을 거쳤고, 이 사건 교회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이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사례비의 액수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이나 계약기간,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직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나) 통상 전도사는 목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일정한 교회 등에 소속되어 목사를 보좌하여 종교활동을 하는 직책으로서 설교나 예배 인도 등을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망인 역시 이 사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종교활동을 함께 있어서 담임목사 ○○○의 지휘를 받아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나아가 영세한 규모의 이 사건 교회의 특성상 망인은 위와 같은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맡라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도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비품을 구입하여 오라는 담임목사 ○○○의 지시를 받아 이

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제반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망인은 담임목사 ○○○의 출장 지시가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동안 이 사건 교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고, 종교활동을 포함하는 망인의 업무의 특성상 망인이 스스로 제3자 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다.

라) 망인이 전도사로 활동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생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나,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할 당시부터 이 사건 교회 측과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금원의 액수 및 지급시기,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매 월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처(원고)와 아들 등 망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는바, 망인이 이 사건 교

회 측으로부터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단순한 실비변상이나 선의로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이 아니라 망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 할 당시 망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나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거나 이 사건 교회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

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
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